



강북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위원 해촉

『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』 제4조에 따라 아동위원협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해촉하고자 합니다.

가. 해촉 근거: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제4조 제4항 제3호

“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”

1. 위원이 사망,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이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

나. 대상자 현황: 총 35명 중 12명 해촉(붙임1 참조)

붙 임 1. 해촉 명단 1부.

2.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위원 명단 1부. 끝.

주무관

조유미

청소년복지팀장

곽노성

교육지원과장

정연욱

행정관리국장

06/29
고한석

협조자

시행 교육지원과-13364 () 접수 ()

우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(수유동) / <http://www.gangbuk.go.kr>

전화 02-901-6308 / 전송 02-901-6309 / green0405@gangbuk.go.kr / 부분공개(6)